
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제5항에 따라 “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0년 12월 30일

국토해양부장관

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6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발주청이 「건설기술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 및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02조 및 제105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·시공감리 및 검측감리(이하 “책임감리 등”이라 한다)업무를 수행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.

제3조(세부기준) 이 세부기준의 평가항목·평가요소·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[별표]와 같다.

제4조(기타사항) ① 발주청은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책임감리 등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 점	세 부 평 가 방 법												
라.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	(3) 건설 기술연구 개발사업 참여실적	1	○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 및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1조, 「해양수산발전기본법」 제33조에 따른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(연차별과제 협약종료의 경우도 포함)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-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(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): 0.6점/건 -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(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): 0.4점/건 -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: 0.2점/건 ※ 하나의 사업(과제)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한다. 하나의 사업(과제)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,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 전체, 일반과제의 경우에는 일반과제 전체를 말한다 ○ 2012.1.1부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항목은 폐지												
마. 업무중첩도	(1) 상주 감리원	[5] 3	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 분</th> <th>책임감리원</th> <th>보조감리원</th> </tr> <tr> <th>점 수</th> <td>2</td> <td>1</td> </tr> </table> - 다른 공사현장(기술지원감리원 포함)에 중복배치시 :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※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감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(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청장이 해당 감리용역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에 따라 확인시 인정, 또한 발주청이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)	구 분	책임감리원	보조감리원	점 수	2	1						
구 분	책임감리원	보조감리원													
점 수	2	1													
	(2) 기술지원 감리원	2	○ 기술지원감리원(2점) -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: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- 다른 공사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으로 10개이상 중복배치시 : 0점												
바. 교체빈도	(1) 감리 전문회사	[10] 5	○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(교체빈도율) * 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교체빈도율 (%)</th> <td>5% 미만</td> <td>5% 이상 10%미만</td> <td>10%이상 15%미만</td> <td>15%이상 20%미만</td> <td>20% 이상</td> </tr> <tr> <th>점 수</th> <td>5</td> <td>4.5</td> <td>4</td> <td>3</td> <td>0</td> </tr> </table>	교체빈도율 (%)	5% 미만	5% 이상 10%미만	10%이상 15%미만	15%이상 20%미만	20% 이상	점 수	5	4.5	4	3	0
교체빈도율 (%)	5% 미만	5% 이상 10%미만	10%이상 15%미만	15%이상 20%미만	20% 이상										
점 수	5	4.5	4	3	0										
	(2) 참여 감리원	5	○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교체 1회당 0.25점씩 감점 (기술지원감리원의 경우 1회당 0.1점씩 감점)												